제902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중소벤처기업부)	1.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(신설) ○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발급하는 약정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 관련 내용* 추가 *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 물품등의 명칭,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,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, 납품대금 연동 산식,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, 조정일,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○ 연동제 관련 약정서 기재의무의 예외가 되는 단가·소액계약의 범위를 '거래기간 90일 이내, 대금 1억원 이하'로 규정하고,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재위임 ▶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2. 벌점의 부과기준(신설) ○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금지 위반 : 미연동 합의를 하는 유형 5.1점, 그 외 유형 3.1점의 벌점 부과 ○ 약정서에 연동에 관한 사항 미기재, 연동 관련 성실협의 의무 위반, 미연동 합의 후 약정서에 그 취지와 사유 미기재, 연동에 관한 사항 미이행을 위한 위탁기업의 위탁의 임의취소, 변경 행위 : 처분 내용에 따라 1.5점 ~ 3.1점의 벌점 부과 ▶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2	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공정거래위원회)	1.하도급계약시 서면 기재사항(강화) ○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발급하는 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하도급대금 연동* 관련 내용 추가 *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, 주요 원재료, 조정요건,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, 하도급대금 연동 산식,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, 조정일,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 ○ 연동 관련 서면 기재의무의 예외인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의 기준을 각각 법률상 상한선과 동일하게 단기계약 90일 / 소액계약 1억원으로 규정하고, 거래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고시로 재위임 ▶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. 벌점 부과기준(강화) ○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신설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의 부과기준 마련 –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 금지 위반 : 미연동 합의를 하는 유형 5.1점, 그 외 유형 3.1점의 벌점 부과 – 서면에 연동에 관한 사항 미기재, 연동 관련 성실협의 의무 위반, 미연동 합의 후 서면에 그 취지와 사유 미기재 :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0.25점 ~ 2.0점의 벌점 부과 ▶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	1.비중요 2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3	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개정안 (해양수산부)	1. 지정교육기관의 사전교육 실시 의무(강화) ㅇ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실습시간, 휴식시간, 실습생(노동)인권, 산업안전보건, 직장예절, 직업윤리, 부당행위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 매뉴얼을 마련한 후 이에 따른 선박적응훈련을 실시 ㅇ 지정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, 관련 사항을 공지해야 함 ▶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4조 2. 지정교육기관의 실태점검 및 실태점검 결과의 조치규정 신설(강화) ㅇ 현장실습 표준협약서 이행실태 점검, 매 분기 1척 이상의 선박에 대한 방문 점검, 실태점검 결과 보고 등 규정 ▶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제6조, 제7조	1.비중요 2.비중요
4	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(금융위원회)	1. 퇴직연금내 사모발행 파생결합사채 판매 금지 등(신설) ㅇ 퇴직연금에서 사모발행 파생결합사채 판매를 금지하고,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 원리금보장상품 규제(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금지, 수수료 규제, 30% 제공 한도 등)를 적용 ▶ 퇴직연금감독규정 제9조, 제11조, 제15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5	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(국토교통부)	1.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설립 · 운영준수사항 등(신설) ㅇ 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, 운영위원회 구성 및 결격사유, 재무건전성 기준, 예결산 제출절차 등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신설 ▶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2, 제13조의13, 제13조의14, 제13조의15, 제13조의16, 제13조의17, 제13조의18, 제13조의19	1.비중요
6	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(환경부)	1.건강영향항목의 평가대상 신설(시멘트 소성로)(강화) o 건강영향 항목 추가·평가대상 사업에 시멘트 소성로[시설 규격(생산능력) 100톤/일 이상) 추가 - 사업자는 시멘트 소성로[시설 규격(생산능력) 100톤/일 이상)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공중 · 보건위생 평가항목에 건강영향을 추가하여 작성하고, 협의 기관은 추가된 건강영향 항목을 검토 · 평가하여 협의 ▶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	1.비중요
7	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 금고 우선출자 발행 · 모집 등 기준 설정(신설) ㅇ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他 상호금융기관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참고하여 금고 우선출자의 발행 · 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▶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의2	1.비중요 2.중요 3.비중요 4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2. 금고 상근임원의 자격요건(신설) ㅇ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, 특정 기간 이상 금고 혹은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구체적 요건 규정 ▶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 3.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변경(강화) ㅇ 구성원을 현행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면서 구성을 변경(장관지명 공무원 1→2, 외부전문가 4→3, 중앙회 이사 3→1, 금고이사장 4→2) ▶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3조 4. 연금저축 등 별도 보호한도 적용(신설) ㅇ 연금저축공제, 사고보험금 및 별단예탁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(각각 5천만원) 적용 ▶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	
8	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(환경부)	1.악취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추가(신설) ㅇ 「악취방지법」제18조제5항 및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악취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, 행정처분기준 추가 * (1차) 경고, (2차) 업무정지 1개월, (3차) 업무정지 3개월, (4차) 지정취소 ▶ 악취방지법 제19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9	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(경찰청)	1.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(신설) ○ 「지능형로봇법」 제40조의2에 따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▶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, 제2조의4	1.비중요
10	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(법무부)	1.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(신설) ○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해 지자체장이 관리인에게 ‘규약, 의사록, 관리단집회의 기록’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▶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	1.비중요
11	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안 (식품의약품안전처)	1. 캔디류 식품첨가물 사용시 당알코올 사용량 총합 제한(신설) ○ 캔디류 제조·가공·수입업자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당알코올 사용량 총합(20% 이하)을 제한 ▶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 제3조 별표	1.비중요
12	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 대행자의 등록요건 등(강화) ○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등록요건에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를 신설하고, 침수흔적도 작성업무를 대행하려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규정 ▶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2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3	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(행정안전부)	1.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(강화) ○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한 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정된 관리책임자에게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 ▶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 2.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· 관리(신설) ○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 ○ 수방기준제정대상 시설물의 소유·관리·점유자에게 수방기준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의 유지·관리 의무를 부과 ▶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	1.비중요 2.비중요